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[별지 제4호의2서식] <개정 2025. 3. 21.>

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

신청법인 (인수법인)	① 법인명	② 사업자등록번호
	③ 대표자 성명	④ 생년월일
	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(전화번호:)	
피인수법인	⑥ 법인명	⑦ 사업자등록번호
	⑧ 대표자 성명	⑨ 개업일
	⑩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(전화번호:)	
	⑪ 취득일 전의 사업 종류	

주식취득일	년 월 일	주식 등을 매각하고 받은 대가의 총합계액		
		⑫ 계(⑬+⑭)	⑬ 주식(출자지분) 가액	⑭ 기타

세액공제 계산내용

기술가치 산정금액	⑮ 벤처기업특별법상 평가기관의 피인수법인의 특허권등 평가 금액 × 지분비율 (다만, 다음 금액을 한도로 함) Max(피인수법인에게 지급한 매입가액 − 순자산시가 × 지분비율, 0)	
	⑯ 지급대가 중 피인수법인의 특허권 등의 해당 금액 (⑰−⑱)	
	⑰ 피인수법인에게 지급한 매입가액	
	⑱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[(⑲−⑳) × 120% × 지분비율]	
	⑲ 피인수법인의 자산총액(특허권등 평가가액 제외)	
	⑳ 피합병법인의 부채총액	
	㉑ 기술가치 금액	
㉒ 세액공제금액 [㉑ × (10%, 5%)]		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1조의4제12항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방법

1. "⑮ 벤처기업특별법상 평가기관의 피인수법인의 특허권등 평가 금액 × 지분비율"란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1조의4제4항제1호에 따라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이 평가한 금액에 취득일 현재의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.
2. "㉑ 기술가치 금액"란: ⑮란의 금액과 ⑯란의 금액 중 선택한 금액을 적되, 2025년 2월 28일 이후 주식등을 최초 취득한 경우에는 ⑮의 금액을 적습니다.
3. "㉒ 세액공제금액"란: 2024년 12월 31일 이전 주식등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10%, 2025년 1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5%를 적용합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